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의3] <신설 2020. 1. 9.>

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(제3조의3제5항 관련)

1. 인증표시



인증번호 제 호
산 림 청

2. 작도법

- 가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하고, 안쪽 동심원의 내부에는 산림청 상징표시(symbol mark)를 사용하며,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을, 아랫부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.
- 나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명칭과 인증번호 및 산림청 명칭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22:16:24로 한다.
- 다.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,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되,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